

# 성장과 차별, 조선 후기 호적과 신분\*

權乃鉉\*\*

I. 머리말	IV. 호적과 신분
II. 성장하는 사람들	V. 맺음말
III. 차별과 배제	

## • 국문초록

19세기 호적에 등장하는 상당수의 유학은 비 양반층 가계에서 성장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군역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지만 양반들의 생활 문화를 모방하는 이들도 갈수록 늘어났다. 그 가운데에는 과거에 합격하여 중앙 관료를 지낸 이도 있었다. 하지만 비 양반층이 지배층에 편입되기는 매우 어려웠으며, 전통 양반들은 차별과 배제의 방식으로 그들의 성장을 억제하였다. 그것은 변화된 정치, 사회 현실에 대한 양반층의 보수적 대응이기도 했다. 국가는 종친이나 관료 집단의 영속적 특권을 인정하지 않는 한편으로 고역인 직역을 통제하였다. 이 과정에서 비 양반층 일부는 성장의 기회를 얻었고, 일부는 차별에 의해 성장이 억제되었다. 조선 후기의 호적은 유학의 증가 현상만이 아니라 이처럼 신분 구조와 변화의 다양한 양상을 보여준다. 이는 양반이 가진 특권의 하향 이동과 비 양반층의 양반 모방 확산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주제어 : 사회적 성장, 신분, 호적, 유학, 차별과 배제, 모방

\* 이 연구는 2020학년도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특별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고려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 I. 머리말

조선의 신분제에 관한 연구 쟁점 가운데 하나는 법적 규정으로 신분을 구분할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 통념에 따라 구분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또 하나의 쟁점은 조선 후기 신분제가 변동, 해체 과정에 있었는가, 아니면 장기간 지속, 안정되어 있었는가 하는 점이었다.<sup>1)</sup> 이 두 가지 문제는 모두 양반에 대한 이해와 연관되어 있었다. 양반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가 이들을 특권 신분으로 이해하는 데 반해, 조선은 전형적인 신분제 국가가 아니며 양반도 순수한 신분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존재한다.<sup>2)</sup>

양반은 분명 법적으로 규정된 존재가 아니었다. 이는 당대 조선사회에서 양반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며, 연구자들의 규정 역시 주관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지주제와 신분제를 중심으로 조선사회를 설명하려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신분제 변동의 핵심적인 논거는 비 양반층의 양반화였다.<sup>3)</sup>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적 근거는 幼學의 급격한 증가 현상을 기재한 호적대장에 있었다.

그런데 18세기 이후 호적대장의 유학이란 직역은 양반임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 못했다.<sup>4)</sup> 양반이 독점했던 유학 직역에 대한 문호가 서얼에게 개방된 이후 그 하위 신분의 진입 가능성도 열리게 되었던 것이다.<sup>5)</sup> 더구나 노비의 수는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그들도 속량 이후 직역 변동을 시도하여 소수이기는 하지만 유학에 접근하는 이들이 생겨났다. 호적의 유학을 기준으로 양반의 증가를 설명하기

- 
- 1) 李成茂, 『朝鮮初期兩班研究』, 일조각, 1980; 韓永愚, 『朝鮮前期 社會經濟研究』, 을유문화사, 1983; 劉承源, 『朝鮮初期 身分制 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1986; 宋俊浩, 『朝鮮社會史研究, 朝鮮社會의 構造와 性格 및 그 變遷에 關한 研究』, 일조각, 1987; 김성우, 『조선중기 국가와 사족』, 역사비평사, 2001.
  - 2) 미야자마 히로시, 「조선시대의 신분, 신분제 개념에 대하여」, 『대동문화연구』 42,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3.
  - 3) 권내현, 「내재적 발전론과 조선 후기사 인식」, 『역사비평』 111, 역사비평사, 2015.
  - 4) 유학구, 호적에 대한 연구는 무수히 많으므로 관련 연구사를 정리한 논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노영구, 「朝鮮後期 戶籍大帳 研究現況과 電算化의 一例」, 『대동문화연구』 39,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1; 심재우, 「조선후기 사회변동과 호적대장 연구의 과제」, 『역사화 현실』 62, 한국역사연구회, 2006; 權奇重, 「조선후기 호적 연구의 현재와 향후 과제」, 『대동문화연구』 100,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7.
  - 5) 李俊九, 『朝鮮後期 身分職役變動研究』, 일조각, 1993, 30면.

어렵게 된 것이다.

신분제 변동과 해체, 특히 비 양반층의 양반화를 근대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전제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논리는 실증적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근대로의 이행에 성공한 국가들 역시 신분제 해체가 반드시 선행된 것도 아니었다.<sup>6)</sup> 신분제 안정론 역시 신분에 관한 통념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커진 조선사회를 전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한다. 이러한 선형적 판단보다 중요한 것은 호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신분제의 특징은 물론 신분 상승을 위한 당대인들의 노력과 한계를 이와 연관시켜 파악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호적과 신분에 관한 기존의 연구 성과와 일부 자료를 바탕으로 유학 직역을 획득하거나 관료로까지 진출한 비 양반층 가계의 사회적 지위 상승에 대해 살펴보았다. 더불어 이러한 성장이 가진 한계와 기존 질서를 지키려는 이들의 대응을 사회적 통념과 차별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해 보고자 하였다. 이는 유학의 급증이라는 호적 기록의 이면에 담긴 당대인들의 인식과 관념을 분석하여 신분에 대한 이해를 넓히려는 것이기도 하다.

## II. 성장하는 사람들

조선 후기 문과 급제자 인명록인 『文譜』의 종류는 다양하다. 그 가운데 장서각에는 1891~1905년(고종 28~광무 9) 시기의 기록인 『문보』 3책이 남아 있다.<sup>7)</sup> 1책에는 이씨, 김씨 등이 수록되었고, 2책에는 박씨, 윤씨, 정씨 등 좀 더 많은 성관들이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 3책에는 1, 2책에 포함되지 않은 수많은 성씨들이 수록되었다. 1책의 이씨를 보면 첫머리의 전주 이씨 외에 연안, 경주, 용인, 함평 등 한 명이라도 급제자를 배출한 다양한 본관의 이씨들이 들어 있다. 다른 성씨들도 이와 같은 형식으로 정리되어 있다.

---

6) 백광렬, 『한국 근대전환기 '신분'·'신분제' 용어의 성립과 변천』, 『개념과 소통』 22, 한림과학원, 2018.

7) 『文譜』(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K2-1744).

이 『문보』는 성씨별, 본관별로 수록되어 한 성관의 사회적 지위를 기재 순서로 구분하기는 어렵다. 다만 1책에는 전주 이씨, 안동 김씨, 2책에는 반남 박씨, 파평 윤씨, 동래 정씨 등 비교적 문과 급제자를 많이 배출한 성관들이 들어가 있다. 각 인물들 아래에는 주로 지방 출신의 거주지가 나와 있다. 지방 급제자의 거주지가 모두 기록되어 있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운데, 이 자료는 출신지를 표시하였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추적이 가능하다.

여러 성관들 가운데 3책에 수록된 진주 강씨는 모두 22명이며, 이 가운데 출신 지역이 기재된 이는 11명이다. 이 중에는 경상도 단성 출신 姜永壽(姜永禛)라는 인물이 포함되어 있다. 단성의 유력 사족이자 과거 급제자를 배출한 대표적인 성관은 안동 권씨, 성주 이씨, 합천 이씨, 상산 김씨 등이었다. 이와 같은 단성의 주요 양반가계 출신이 아니었던 강영수란 인물에 대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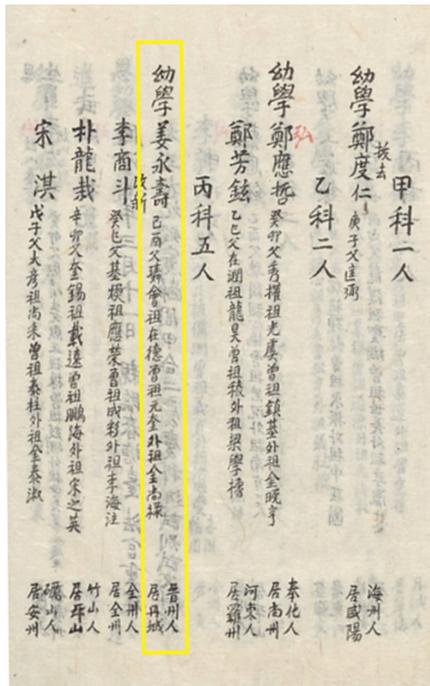
姜運慶	姜聖喜	姜機	姜文慶	姜永壽	姜鐸
台俊	時伯	濬	源	在德	聖
元成	言	惠天	元成	元成	聖
百濬	亨	世	柱	建	聖
晉英	東悅	世	建	建	聖
胤	以	世	載	載	聖
東立	遊	世	晉	晉	聖
李秀	沈	趙	金	金	金
秀	續	啓	尚	尚	尚
相	漢	且	祿	祿	祿
相	東	伯	表	表	表
永	漢	應	斗	斗	斗
	永	禛	丹	丹	丹

〈그림 1〉 『文譜』에 기재된 姜永壽

『문보』에 표시된 이름 옆의 부가 정보를 통해 그는 기유년(1849)에 태어났고 정묘년(1867)에 庭試로 급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정시는 부정기시의 하나로 국가의 경사

를 비롯한 다양한 명목으로 궁궐의 뜰에서 실시되었다. 주로 表나 賦로 시험을 보고 당일 합격자를 발표하여 응시자가 많았다. 이에 따라 영조대에는 정시를 초시와 전시로 나누고, 초시 합격자에게 다시 3경 가운데 하나를 背講하게 하였다. 헌종대에는 초시를 서울과 각 도의 감영에서 나누어 실시하였다.<sup>8)</sup>

결국 강영수는 式年試가 아닌 부정기시인 정시에 급제하였다. 시기상으로 보아 그는 대구 감영에서 치러진 초시에 합격하였고, 이후 서울에서 전시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그가 부정기시의 동향을 파악할 정도로 과거에 관심이 많았으며 응시 정보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더불어 강영수는 평소 과거 준비는 물론 대구와 서울을 오가며 과거에 응시하고 급제할 정도의 경제력과 학문적 자질을 갖추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國朝榜目』에 기재된 姜永壽

8) 庭試의 각종 규정에 대해서는 『大典會通』 禮典 諸科의 庭試 규정 참조.

이제 그가 응시한 시험에 대해 榜目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國朝榜目』을 보면 1867년(고종 4)에는 식년시에서 46명, 정시에서 8명, 함경도 道科에서 4명의 문과 급제자가 나왔다.<sup>9)</sup> 갑과 1명, 을과 2명, 병과 5명을 뽑은 정시에서 강영수는 병과 1위를 차지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는 19세였다. 이때의 정시는 翼宗에게 존호를 올린 일, 익종 비 신정왕후의 육손 및 존호를 더하여 올린 일을 축하하여 창경궁 春塘臺에서 치러졌다. 이 내용은 『고종실록』에도 나와 있다.<sup>10)</sup>

이제 『문보』와 『국조방목』에 실린 내용을 바탕으로 강영수의 가계를 추적해 보자. 19세기 『단성호적대장』에서 강영수란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 강인회는 1867년 도산면 용흥촌의 유학 직역자로 등장한다. 강인회의 4조는 모두 학생이며, 부인 김해 김씨의 4조 역시 모두 학생이다. 그들에게는 永煥이라는 동몽 직역의 아들 한 명이 나오는데, 기유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아 강영수와 같은 인물임이 분명하다. 호적이 과거 급제 이전에 만들어졌으므로 그의 직역은 동몽으로만 표시되어 있다.

1867년 이후의 19세기 도산면 호적은 1885년의 것이 남아 있다. 이 호적의 주호는 유학 강인회이며 아들 영수는 통훈대부행사헌부장(령)이란 직역명으로 등장한다. 통훈대부는 정3품 품계이고 사헌부 장령은 정4품의 관직이었으므로 行守法에 따라 행사헌부장령으로 표기하였다. 그렇다면 그는 실제로 사헌부 장령의 관직을 지냈을까? 이 시기의 기록을 찾아보면 그는 분명 사헌부 장령으로 활동하고 있었다.<sup>11)</sup>

강영수는 문과 급제 이후 교서관에 權知로 배속되었고 종9품 副正字로 본격적인 관료 활동을 시작하였다.<sup>12)</sup> 1870년에 그는 정6품의 성균관 典籍, 1872년에는 정5품으로 청요직인 병조 정랑에 올랐다.<sup>13)</sup> 1875년 청의 사신이 왔을 때 그는 조서를 받드는 捧詔官으로 활약하기도 하였다.<sup>14)</sup> 이후 여러 관직을 거친 강영수는 1880년대 후반 사헌부 장령에 올랐다. 이 무렵 이름을 姜永祺로 고친 그가 기록상 맡은 마지막 관직은 1893년의 예조 좌랑이었다.<sup>15)</sup>

9) 『國朝榜目』(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奎貴 11655).

10) 『高宗實錄』 권4, 고종 4년 9월 17일(정묘).

11) 『承政院日記』 2968책, 고종 24년 12월 27일.

12) 『承政院日記』 2727책, 고종 5년 5월 14일; 2743책, 고종 6년 9월 8일.

13) 『承政院日記』 2753책, 고종 7년 7월 10일; 2772책, 고종 9년 1월 15일.

14) 『承政院日記』 2812책, 고종 12년 4월 12일.

더 이상의 승진은 없었지만 그는 과거 급제 이후 30년 가까이 중앙 관료로 활동하였고 청요직을 맡기도 하였다. 19세기 지방 전통 양반 가문의 인물들도 과거에 급제하기가 쉽지 않았으며, 급제하더라도 청요직에 오르기는 더 어려웠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강영수의 관력은 나름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단성의 유력 양반으로 1862년 항쟁을 주도한 상산 김씨 金麟變은 정6품의 사간원 正言 등을 거친 뒤 짧은 관직 생활을 끝내고 낙향하였다.

그렇다면 강영수는 이웃 군현에서 단성으로 이주한 전통 양반 가문 출신이었을까? 그렇지 않았다. 그의 직계 선조는 대대로 단성 도산면에 거주하였다. 조부 강재덕은 1858년 도산면 碧溪의 유학으로 한 명의 노비를 거느리고 있었다. 그런데 1831년 호적에서 그의 직역은 유학이 아닌 驛吏였다. 벽계는 단성에 위치한 역으로 강영수의 조부는 원래 역촌에 거주했던 역리였던 것이다.

18세기 호적에는 강영수의 증조부와 고조부까지 파악이 되는데, 이들 모두 벽계역의 역리였다. 이 가계의 인물로 현존 호적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는 강영수의 5대조 강신건으로 그 역시 1678년 도산면 벽계역의 역리였다. 강영수의 선조는 대대로 벽계역에 귀속된 역리 가계였던 것이다. 이 가계의 인물들은 17세기 후반 이래 오랫동안 역리 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따라서 벽계의 진주 강씨 구성원 대다수는 혈연적으로 연결된 역리 출신이었다.

18세기 후반 강영수의 증조부 강원재는 노비를 소유할 정도로 경제력을 갖추었다. 이를 배경으로 19세기 전반 그의 아들과 손자 일부는 유학을 칭하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가계 구성원 대다수는 여전히 역리였고, 강영수의 조부 강재덕은 1849년에야 비로소 유학이 되었다. 이후 강영수의 조부와 아버지는 줄곧 유학을 칭하였지만 1885년까지 진주 강씨 구성원 중에는 역리로 남아 있던 이들이 많았다.

결국 직역의 고착성이 강하고 고역으로 인해 천대받았던 역리 가계의 일부가 유학으로 성장했고, 그 가운데에는 19세기 후반 과거에 급제하여 중앙 관료가 된 이도 있었던 것이다. 전통 양반 가계에 속하지 않은 인물이 과거에 급제하거나 관료로 나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전혀 불가능한 일도 아니었다. 과거에 급제 하느냐의 여부를 떠나 양인의 과거 응시는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었다.

15) 『承政院日記』 2971책, 고종 25년 3월 5일; 3038책, 고종 30년 9월 27일.

역에 속한 직역자는 양인인 역리, 驛保, 驛女, 日守와 노비인 驛奴, 驛婢 등이 있었다. 『경국대전』에는 양인 일반의 과거 응시를 허용하였지만 역리는 제약을 받았던 것 같다. 1590년(선조 23) 역리 일부가 역리의 과거 응시를 허용해달라고 上言하였다. 다음 해 정부는 역리와 비 사이의 소쟁이 아닌 역리와 양인 여성 사이의 소쟁은 과거 응시가 가능하다고 확인해 주었다.<sup>16)</sup> 과거를 통한 역리의 관직 진출이 합법적으로 보장되었던 것이다.

1727년(영조 3) 增廣試의 진사 합격자 가운데에는 강영수와 마찬가지로 역리 가계에 속하며 하동에 거주했던 金尙秋란 인물이 있었다.<sup>17)</sup> 대부분의 소과나 문과 합격자 직역이 유학인 것과 달리 그는 소과 응시 당시 역리였다. 아버지 역시 역리로, 이 가계는 대대로 역리를 지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김상추는 『沙斤道形止案』에 하동 栗元驛 역리 가계의 일원으로 기재되어 있다.<sup>18)</sup> 그는 19세기 유학으로의 성장이라는 일반적 과정을 거치기 전에 이미 소과에 급제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소수 사례는 양인의 과거 응시 권한을 성공적으로 활용하거나 경제력과 직역의 상승을 바탕으로 사회적 지위를 최대로 끌어올린 경우에 해당한다. 국가를 지배하는 관료 가계가 고정 혹은 세습되지 않았던 조선 사회에서 과거 급제나 관료로의 진출은 형식적으로는 조선 초이래 양인 일반에게 보장되어 있었다. 다만 이 통로의 활용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학문의 영역에 접근할 수 있었던 양반들에 의해 독점되었을 뿐이다.

18세기 후반 이후 사회적 성장을 도모했던 많은 평민들은 강영수나 김상추처럼 과거 급제 혹은 관료로의 진출에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유학 직역을 얻어 균역에서 벗어나고 양반의 생활 문화를 모방하여 양반층에 근접해 나가기를 바랐다. 이들의 성장을 국가가 원천적으로 봉쇄했던 것도 아니었다. 이미 많은 연구자

16) 李明九, 『掾曹龜鑑續編』 권2, 兵曹關文, 上言日記.

17) 『崇禎再丁未合五慶增廣別試司馬榜目』(국립중앙도서관 소장, 古朝26-29-50).

18) 『沙斤道形止案』, “戶 驛吏金夏鼎 年陸拾肆 …… 率侄子尙秋 年參拾玖 父處鼎 外祖徐玆山 登成均進士” 『사근도형지안』에 대해서는 임학성, 「18세기 중엽 沙斤道 소속 驛人의 직역과 신분-1747년 “沙斤道形止案” 자료의 분석 사례」, 『고문서연구』 51, 한국고문서학회, 2017; 이유진, 「18세기 중엽 사근도 형지안과 단성현 호적대장의 역인 기재 비교 분석」, 『고문서연구』 51, 한국고문서학회, 2017; 우인수, 「18세기 중엽 沙斤道 驛人의 戶口 구성과 실태-沙斤道 形止案의 분석을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51, 한국고문서학회, 2017; 조병로, 「조선후기 沙斤道形止案의 내용과 성격」, 『고문서연구』 51, 한국고문서학회, 2017 참조.

들이 지적했듯이 19세기 호적이 남아 있는 모든 지역에서 유학 직역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단성 법물야면을 예로 들면 대다수가 유학이었던 상층 직역호의 비율은 1678년 9.7%에서 1762년 21.1%로 늘어났다. 19세기 이 비율은 놀라운 속도로 늘어 1846년 52%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고 급기야 1882년에는 82.6%에 이르렀다.<sup>19)</sup> 물론 호가 아니라 구를 기준으로 하면 이 비율은 떨어지지만 유학 직역자와 그 가족의 수가 대폭 증가했음을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호적을 통해 조선 후기 신분 문제를 연구한 초기 연구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신분 변동, 즉 양반층의 증가로 이해하였다. 하지만 근래의 연구는 이를 직역 변동, 호적의 성격이나 부세 운영의 변화 혹은 계층의 상승 등으로 다양하게 이해하고 있다. 유학 모두를 양반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것은 전통 양반이 아닌 직역 상승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당대에 그들을 양반으로 인식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진사가 된 김상추와 사헌부 장령이 된 강영수는 양반인가, 아닌가? 적어도 직역의 관점에서 그들은 양반이다. 특히 양반이 문무반 관료와 그들의 가족에서, 다시 그 후손으로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강영수는 원래의 양반에 해당하는 인물이다. 하지만 강영수 자신은 과거 급제와 중앙 관료라는 성취를 이룬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급제 이후 그는 증조부 이상 직계 선조들의 이름을 모두 바꾸었다. 더불어 『문보』를 보면 그의 8대조는 수군병마절도사 姜晉昕으로 되어 있다.

강진흔은 1617년(광해 9) 謁聖試에서 무과 급제한 인물로 『備邊司文武郎官契會圖』에 이름이 등장한다.<sup>20)</sup> 그는 진주 강씨로 姜希孟의 후손이었다. 강진흔은 병자호란 당시 충청도수군절도사로 강화도 방어에 합류하였다. 하지만 강화도가 함락되면서 다른 장수들과 함께 참형에 처해졌다.<sup>21)</sup> 방계 후손 姜錫圭의 기록에 의하면 그에 계는 적자 錫龜와 서자 錫龍이 있었다.<sup>22)</sup>

19) 권내현, 「19세기 조선 사회의 계층 이동 양상-유학호와 비유학호의 비교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103,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8.

20) 『備邊司文武郎官契會圖』(국립중앙박물관 소장, 99943).

21) 『仁祖實錄』 권35, 인조 15년 9월 21일(병술).

22) 姜錫圭, 『聲齋齋集』 권9, 「忠清水軍節度使姜公墓表」, 한국문집총간 속38, 민족문화추진회, 2006.

강영수는 자신의 6대조를 錫鵬으로 기재하였는데, 이 인물을 찾기가 어렵다. 아마도 강영수는 자신의 선조를 강희맹과 강진혼 계열로 연결시키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가 중앙 관료를 지냈다고 하더라도 당대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력한 조상을 둔 가계 출신임을 드러낼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양반 신분으로 행세하기 위해서는 유명 관료나 학자로 이어지는 계보가 중요했던 것이다. 더구나 지역 사회에서 기존 양반 세력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자신의 위상을 확보해 나가야만 했다. 그런 면에서 역시 가계 출신의 강영수가 양반으로 완전하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 Ⅲ. 차별과 배제

강영수와 김상추는 법적으로 보장되었으나 현실적으로는 어려웠던 문과와 소과에 급제한 역리 가계 출신 인물들이었다. 국가의 교통과 운송 거점이었던 역에 소속된 驛民들은 다른 직역에 비해 강한 통제를 받았으며 맡은 업무도 고역이었다. 국가는 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역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했다. 그 방편 가운데 하나가 역민의 자녀를 역에 소속시키는 것이었다.<sup>23)</sup>

1861년 단성 법몰야면 상법리의 역리 김종근은 그 단적인 사례였다. 그의 아버지는 벽계 역리였고, 조부·증조부·고조부·5대조도 모두 벽계 역리였다. 그의 직계로 가장 앞선 시기의 호적에 등장하는 6대조 또한 1678년 벽계의 驛卒이었다. 이 가계는 17~19세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역민에 차정되었던 것이다. 국가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고역인 직역은 세습되는 경향이 강하였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차별을 받았다.

---

23) 역과 역민에 대해서는 조병로, 『韓國近世驛制史研究』, 국학자료원, 2005; 이노우에 가즈에, 「19세기 戶籍大帳에서 보는 역촌 사람들의 存在樣態- 晋州 召村里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42,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3; 김정란, 「조선후기 호적대장의 驛女기재와 驛役의 수취-경상도 단성현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연구』 68, 한국외대 역사문화연구소, 2018 등 참조.

〈표 1〉 단성현 도산면 벽계리의 역민호와 유학호 변화

		1678	1717	1750	1789	1849	1867	1885
전체호수		33	40	44	45	50	51	43
역민호	수	20	31	29	22	24	31	22
	비율(%)	60.6	77.5	65.9	48.9	48.0	60.8	51.2
유학호	수	1	0	0	5	14	12	6
	비율(%)	3.0	0	0	11.1	28.0	23.5	14.0

역촌이었던 벽계의 역민호는 18세기 전반까지 전체 호수의 60% 이상이었다.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전반 사이에 그 비율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직역 변동이 심했던 19세기 후반에도 50%가 넘었다. 역민 직역의 연속성, 세습성은 매우 강했던 것이다. 반면 이곳에서 유학호는 18세기 전반까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18세기 후반부터 서서히 늘어나고는 있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유학의 증가율은 미미한 편이었다.

국가의 통제가 강했던 직역의 상향 이동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아래로부터의 성장 욕구가 국가 권력에 의해 제약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역민이 되는 것을 기피하는 풍조가 만연하자 1672년 驛奴와 양인 처 사이의 소생을 역리로 올려주기도 하였다. 이 조치는 역리의 확보에 유리하였지만 그들의 사회적 지위는 오히려 하락하였다. 반면 1789년(정조 13) 驛奴陞吏 제도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역노의 확보는 어렵게 되었다.<sup>24)</sup>

결국 역노가 감소하고 역리의 일부가 과거에 응시하는 변화가 생겼지만 역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바뀌지는 않았다. 『단성호적대장』에는 노비에서 해방되면서 바로 양인 직역을 부여받은 남성들이 소수 등장한다. 이들의 직역은 ‘贖良○○○’와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모두 10명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가운데 역민 직역이 3, 장인 직역이 2, 어영보가 2명이었다.<sup>25)</sup>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국가의 통제가 강하거나 일반 양인들이 기피하는 직역에 속량 노비들이 충원되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24) 이노우에 가즈에, 앞의 2003 논문, 221~222면.

25) 역민은 1678년 법률야면 손항리 2통 3호의 속량역보 김순이, 1678년 현내면 읍내리 1통 5호의 속량일수 김금석, 1720년 법률야면 손항리 7통 5호의 속량역보 조명석 등이다.

그 가운데 1678년 법률야면 손항리의 속량역보 김순이의 후손들을 추적하면 1846년 법률야면 호적에 모두 8명이 등장한다. 이들의 직역은 수군 3, 마병 2, 마병보 1, 교보 1, 한량 1이었다. 김순이의 후손들 대다수는 역민과 마찬가지로 천시 받았던 수군과 군역에 충정되어 있었고, 가장 높게 직역 상승을 이룬 이는 한량 한 사람이었다. 속량에도 불구하고 역민이 되거나 수군역을 맡으면 사회적 성장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것이다.

노비의 후손들 가운데에는 경제력 향상과 거주지 이동, 본관 변경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유학으로 성장한 이들이 존재했다. 이러한 성장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많은 이들은 양인 군역자 단계에서 멈추어야 했고 일부는 기피 직역을 맡아야 했다. 1717년 사노 만석의 후손은 1846년 호적에 4명이 기재되었는데, 2명이 역리, 1명이 수군, 나머지 1명이 藥保였다.<sup>26)</sup> 역리와 수군을 맡은 후손이 많았던 이 가계 역시 성장에 제약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19세기 직역의 전반적인 상향 이동 과정에서 군역 자원에 대한 확보가 강화되고 호적 작성이 엄격해지면 직역이 하향하는 이들이 있었다. 이들 가계를 추적하면 직계 조상에 노비나 수군, 역리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았다. 중간층이나 유학으로 성장한 가계라 하더라도 직계에 노비나 기피 직역을 맡은 이들이 포함되었다면 그 성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힘들 수 있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19세기까지 대대로 양인 군역자에 머물고 더 이상의 직역 상승을 이루지 못한 가계는 양인 군역자에서 중간층이나 유학으로 상승한 가계보다 직계에 수군이나 역리가 포함되는 비율이 월등하게 높았다.<sup>27)</sup>

이를 통해 양천제 하에서 존재했던 身良役賤의 흔적이 후기까지 잔존했음을 알 수 있다. 개인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데에는 이처럼 국가가 부여한 직역이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개인이나 가계의 성장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고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했다. 국가의 통제가 강하고 사회적으로 차별받았던 직역에서 벗어나면 하층민은 업유나 업무와 같은 중간층으로 상승한 뒤 유학에 이르는 길에 동참할 수 있었다.

26) 이들은 법률야면 호적에 나오는 역리 김성담, 역리 김운세, 수군 김일성, 약보 김어인노미이다.

27) 권내현, 앞의 2018 논문, 224~225면.

국가의 통제와 함께 하층민의 성장에 영향을 준 또 다른 힘은 양반층의 압력이었다. 토지에 비해 노비의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었지만 노비는 양반 경제력의 주요한 한 축을 담당하였다. 하지만 속량의 길을 열어 준 국가의 다양한 조치와 노비들의 저항으로 인해 이들의 숫자는 계속 줄어들었다. 양반들은 자신들을 중심으로 지역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평민들의 사회적 성장을 원하지 않았지만 이 또한 갈수록 쉽지 않았다.

19세기 유학의 급격한 증가도 그 산물이었다. 그런데 유학의 증가 양상도 지역별로 차이를 드러냈다. 1882년 호적을 기준으로 단성 법률야면에서 유학호의 비율이 가장 높은 이교리와 가장 낮은 울현리를 비교해 보자.<sup>28)</sup>

〈표 2〉 단성현 법률야면 이교리와 울현리의 유학호 변화

	이교			울현		
	전체호수	유학호수	비율(%)	전체호수	유학호수	비율(%)
1678	11	0	0	35	0	0
1717	19	0	0	61	0	0
1762	13	0	0	71	4	5.6
1789	16	0	0	79	6	7.6
1825	21	1	4.8	75	3	4.0
1846	13	5	38.5	77	19	24.7
1861	15	15	100.0	66	19	28.8
1882	10	10	100.0	45	21	46.7

법률야면 유학호 전체 비율이 80%가 넘었던 1882년에 이교의 유학호는 100%였던 반면 울현은 46.7%에 머물렀다. 이 두 곳은 18세기 전반까지 유학호가 전혀 없었던 전형적인 민촌이었다. 양반들의 견제가 있었던 반촌보다 민촌에서 하층민의 유학으로의 성장이 상대적으로 용이했다.<sup>29)</sup> 이교나 울현도 18세기 후반 혹은 19세기

28) 법률야면 유학호수는 심재우, 「조선후기 단성현 법률야면 유학호의 분포와 성격」, 『역사와 현실』 41, 한국역사연구회, 2001, 37면의 표를 참고해 작성하였음.

29) 이준구는 유학이 도시 지역보다는 농촌 지역에서, 반촌보다는 민촌에서 크게 증가한다고 보았다. 李俊九, 「18·19세기 身分制 변동 추세와 身分 지속성의 경향」, 『한국문화』 19, 서울대 한국학연

초부터 유학호가 조금씩 늘기 시작해 1846년에는 두 자리 수까지 올라갔다.

1789년까지 이교에는 유학호가 전혀 없었던 반면 율현에 소수의 유학호가 나타난 것은 두 곳의 주민 구성 차이 때문이었다. 1678년 이교는 전체 11호 가운데 사노비 7호, 평민 4호로 최하층민 촌락이었다. 반면 율현은 사노비 13호, 평민 22호로 평민호의 비중이 더 높았다. 노비가 다수를 이루었던 촌락은 평민이 주류인 촌락보다 유학의 등장에 걸리는 시간이 더 길었던 것이다. 호적에 등장하는 가계의 계보를 추적해 보면 일반적으로 어떤 신분이나 계층에서 출발하느냐가 이후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30)</sup>

그런데 19세기 중반 이후 두 촌락의 유학호 증가가 역전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교는 촌락의 규모가 작으니까 모든 호가 유학이었던 1861년에는 두 호를 빼고 달성 서씨 호였고, 1882년에는 오로지 달성 서씨 호로만 구성되었다. 이들은 타 성관을 배제하면서 같은 부계 혈연 구성원의 집거를 이루었고, 동약에 적극 참여하면서 촌락 운영의 주도권을 장악하였으며, 집단적인 개명과 직역 상승 등으로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나갔다.<sup>31)</sup>

반면 율현의 양상은 이와는 전혀 달랐다. 1861년 66호였던 율현에 등장하는 주호의 성관 종류는 30개나 되었다. 그 가운데 13개는 단 1호만 존재했으며, 가장 호수가 많은 김해 김씨도 6호에 불과했다. 이 촌락을 주도하거나 동성촌락으로 발전시켜 나간 성관이 없었던 것이다. 이때 6호의 김해 김씨 가운데 유학호는 없었다. 평민 직역자는 모두 26호였는데 수군이 12호, 역리가 2호로 두 직역이 과반을 넘었다.

결국 율현의 유학호 증가율이 낮았던 것은 다양한 성관의 잡거로 인해 집단적 성장을 이루기 어려웠다는 점, 19세기 후반까지 수군이나 역리 등 기피 직역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들이 많았다는 점과 연관이 있었다. 물론 그 기저에는 미미한 경제력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양반의 견제가 덜한 민촌에서 하층민의 성장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그것은 경제적 성취, 기피 직역에서의 이탈과

구원, 1997, 219~222면.

30) 李柔珍, 「18세기 대구부 서상면의 신분변동에 대한 계보적 추적」, 『대동문화연구』 87, 성관관대대동문화연구원, 2014; 김건태, 「19세기 공노비 후손들의 삶-제주도 대정현 사례」, 『민족문화연구』 69,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5.

31) 권내현, 「조선 후기 평민 동성촌락의 성장」, 『민족문화연구』 52,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0, 28면.

직역 상승, 가계 윤색과 촌락 주도권 장악 등 다양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했다.

이처럼 유학 직역의 획득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으로 신분 상승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기존의 양반층은 새롭게 성장하는 이들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일찍이 사족들은 지방 지배의 한 축을 담당한 이족들을 배제하여 16세기에는 사족과 이족이 명확하게 구분되었다. 사족은 또한 그들의 서얼을 같은 양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사족 내부의 분화도 이루어져 18세기에는 儒鄕, 즉 사족과 향족의 분화가 확산되었다.

중서층 역시 부유한 평민층의 진입에 맞서 자신들을 그들과 엄격하게 구분하려 하였고, 한편으로는 사족층의 특권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였다.<sup>32)</sup> 평민이든, 중서층이나 양반이든 할 것 없이 그들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은 계층이 자신들의 영역으로 진입해 들어오는 것을 쉽게 용납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통 양반 집단이 유학이 된 하층민 가계 출신들을 인정할 리 없었다.

기존 양반층의 차별과 배제에 따라 여러 지역에서 舊鄕과 新鄕이 나뉘어 대립하였고, 진주에서는 19세기에 元儒와 別儒가 구분되기도 하였다.<sup>33)</sup> 진주에서는 또한 새롭게 유학을 칭한 이들을 ‘民戶幼學’으로 파악하기도 하였다.<sup>34)</sup> 단성 이교의 달성 서씨가 유학으로 집단적인 성장을 이루었지만 양반들의 시각에서 그들은 자신과는 다른 모칭유학일 뿐이었다. 그들은 18세기 양반 중심의 洞案에 전혀 참여할 수 없었고, 주로 평민층이 담당한 穀物息利有司로 활동하였다. 19세기 전반에도 그들은 주로 중간층으로 성장한 이들의 명단인 許廳案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sup>35)</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 양반 가계 구성원들은 지속적으로 유학으로의 진입을 시도하였다. 향리와 같이 일반적으로 특정 성씨가 지역 향리직을 독점하고 유학으로의 상승보다는 상층 향리로 남기를 희망하는 경우도 있었지만<sup>36)</sup> 군역에서 벗어나 유학

32) 김준형, 「18세기 향촌사회 신분구조의 혼효」, 『역사와 경계』 103, 부산경남사학회, 2017, 83면. 중서층을 중심으로 조선 후기 신분 변화 양상을 살펴본 연구로는 정진영, 「향촌사회에서 본 조선 후기 신분과 신분변화」, 『역사와현실』 48, 한국역사학회, 2003을 참고할 수 있다.

33) 李海濬, 「조선 후기 晉州地方 儒戶의 實態-1832년 晉州鄕校修理記錄의 분석」, 『진단학보』 60, 진단학회, 1985.

34) 김준형, 「19세기 진주의 신흥계층 ‘幼學’호의 성격」, 『조선시대사학보』 47, 조선시대사학회, 2008, 166-173면.

35) 『洞內穀物息利有司姓名冊』, 『許廳案』(『慶尙道丹城縣社會資料集』 1,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3에 수록).

에 이르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의 염원이었다. 기존의 양반들은 이러한 변화에 맞서 차별과 배제를 통해 자신들의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 IV. 호적과 신분

조선 왕조가 법적으로 규정한 신분은 良賤制였다. 천민의 대다수를 구성했던 노비는 합법적인 속량과 불법적인 도망 등의 방식으로 신분적 억압에서 점차 벗어났다. 1669년(현종 10)에 실시된 從母法은 1731년(영조 7)에 확정되었으며, 1801년(순조 1)에는 內寺奴婢가 혁파되었다. 이러한 국가의 정책과 노비들 스스로의 신분 상승 움직임에 따라 노비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나갔다.

호적에서 노비호는 18세기부터 크게 줄어들기 시작하여 19세기에는 소수만 나타난다. 평민으로 신분 상승한 노비의 후손들은 다시 중간층으로, 그리고 일부는 유학으로까지 성장하였다. 1846년 단성 법률야면의 경우 유학호의 5.2%가 노비 가계 출신이었다. 비 유학호는 12.8%가 노비에서 중간층으로 성장한 가계, 30.3%가 노비에서 평민이 된 가계 출신이었다.<sup>37)</sup> 이 시기 노비호는 호적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노비의 후손들은 유학과 같은 상층 직역을 획득하기까지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걸렸고, 성장 과정에서 직역의 하락을 경험하거나 혹은 기피 직역을 맡아 성장이 저지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비들은 신분 상승 과정에 있었고, 더 상위 직역으로 이동한 평민들의 뒷자리를 채워나갔다. 19세기 호적의 누락율은 높았지만 기재된 이들의 다수는 양반과 성장 과정에 있거나 혹은 이미 성장한 하층민 가계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노비들의 신분 상승에 관해서는 역사학계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다. 그들의 성장은 국가의 정책적 뒷받침과 노비들 스스로의 해방 욕구가 결합된 결과였다. 문제는 노비에서 출발했건, 평민에서 출발했건 간에 비 양반 출신으로 결국 유학이 된 이들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있다. 이미 많은 연구들은 유학이 된 비 양반층의 존재를

36) 權奇重, 「단성호적에서 보는 향리가계의 호구등재」, 『대동문화연구』 52,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5.

37) 권내현, 앞의 2018 논문, 216~219면.

입증하였다. 그렇다면 실제 19세기 유학에는 비 양반 가계 출신들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을까?

전체 호수의 절반 정도가 유학이었던 1846년 단성 법물야면의 사례를 다시 보자. 유학인 주호들의 가계를 일일이 추적한 결과 전체 유학호의 45.5%가 전통 양반 가계 출신이었다. 이 비율은 비 유학호를 합해서 계산하면 26.1%가 된다. 그런데 호적에 기재된 호수는 실재했던 호수에 비해 훨씬 적었으므로 사실상의 유학호는 10%대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1832년 진주의 사례는 이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당시 파악된 호의 11.6%가 元儒, 13.7%가 別儒, 74.8%가 民戶였다.<sup>38)</sup> 전통 양반층인 원유에는 일찍이 유학으로 성장한 비 양반층이 일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비율은 좀 더 내려갈 것이다. 더구나 호가 아닌 구로 계산하면 전통 양반층의 비율은 또 다시 내려가게 된다. 가계 이력을 추적하고 호적에서 누락된 호구를 감안하면 19세기에도 양반층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1846년 법물야면 유학호의 45.5%가 전통 양반 출신이었으므로 나머지 54.5%는 비 양반층에서 유학으로 성장한 호였다. 이들의 선조를 추적한 결과 19.4%가 양반 서얼, 1.5%가 향리, 28.4%가 평민, 5.2%가 노비였다.<sup>39)</sup> 유학호는 계속 증가하는 과정이었으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비 양반층 가계의 비율은 더 늘어날 것이다. 이 가운데 서얼, 향리와 평민 가계 출신 일부가 진주라면 별유로 파악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앞서 확인했듯이 비 양반층에서 유학으로 성장한 이들이 전통 양반층과 같은 사회적 지위를 누린 것은 아니었다. 설령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유학을 칭할 수 있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변함이 없었다. 서얼만 하더라도 18세기 유학 직역 사용이 인정되었지만 그들에 대한 차별이 사라지지는 않았던 것이다. 국가의 용인과 서얼 자신들의 치열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존 양반층은 자신들의 서얼을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았다.

38) 김준형, 「조선후기 晉州의 舊鄕·新鄕, 元儒·別儒의 재분석」, 『조선시대사학보』 78, 조선시대사학회, 2016, 260면.

39) 권내현, 앞의 2018 논문, 216~217면.

따라서 양반들이 평민이나 노비에서 유학으로 성장한 가계를 인정하지 않았음은 분명해 보인다. 실제 이들 유학은 기존 양반들과의 통혼이 불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양반들의 내부 조직이나 연결망에 참여하기도 어려웠다. 서얼들은 그나마 유학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평민이나 노비에서 성장한 이들의 유학 직역 획득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그것을 불법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호적이 3년마다 작성되고 감영과 중앙에까지 이송되었던 것을 보면 늘어나는 유학을 단순 모칭이나 불법 행위의 산물로만 간주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군역 면제와 같은 경제적 동인에 목적이 있든, 사회적 지위의 상승에 목적이 있든 간에 비 양반층의 유학화는 조선 후기 사회에서 점증하고 있었다. 총액제 방식의 군역 운영 또한 이를 가능하게 했던 하나의 통로이기도 했다.<sup>40)</sup>

경제력이 향상된 하층민들은 호적과 부세 운영 방식의 변화를 틈타 끊임없이 유학에 도전하였다. 법률야면 장천촌에 거주했던 辛順再의 사례를 보자. 1825년 그는 禁保로 평민 군역자였다. 이 시기 그는 두 가지 노력을 했는데, 하나는 호적에서 아마도 평민 군역자였을 四祖의 직역을 모두 기록하지 않은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두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을 院生으로 등록시킨 것이었다. 이는 사조와 아들, 그리고 자신의 직역을 상승시켜 나가는 과정이었다.

1828년 신순재는 사조의 직역을 통덕랑, 통정대부, 가선대부, 업무 등으로 올렸다. 1837년 그의 직역은 藥保로 바뀌었는데, 이때 사조 가운데 증조부를 뺀 나머지의 직역을 학생으로 고쳤다. 납속직으로 치부될 수 있는 통정대부나 가선대부 대신 학생을 선택한 것이다. 또한 원생이었던 아들의 직역은 사라지는 대신 며느리는 백성에서 백씨로 바뀌었고 노비도 한 명 두었다. 아직 본인은 아니었지만 사조와 며느리가 유학 가계에 근접하고 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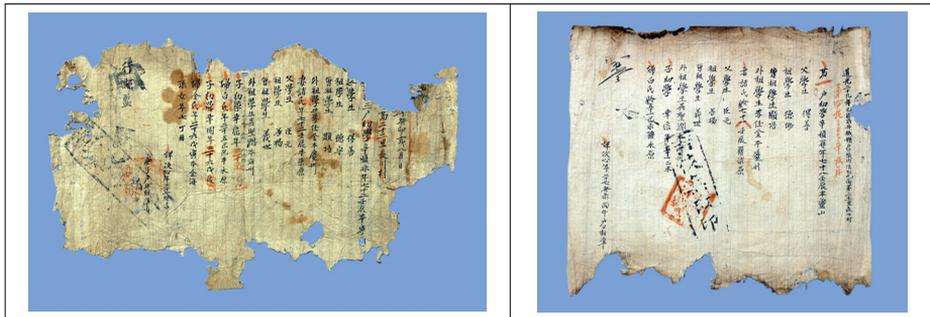
1840년 그는 군역에서 벗어나 閑良이 되었고 3년 뒤에는 마침내 유학에 도전하였다. 하지만 한 번 만에 성공을 거두지는 못하였다. 현재 그와 아들, 손자의 호구단자가 여러 건 남아 있어 호적과의 비교가 가능하다.<sup>41)</sup> 특히 1843년 신순재의 호구단자에는

40) 손병규, 「戶籍大帳 職役欄의 軍役 기재와 ‘都已上’의 통계」, 『大東文化研究』 39,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1; 송양섭, 「19세기 幼學層의 증가양상-『단성호적대장』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55, 한국역사연구회, 2005.

41) 전북대학교 박물관에는 신순재와 아들 신행중, 신행주, 손자 신백기, 신백규, 신백두 등의 19세기 호구단자 20점이 소장되어 있다. 호구단자와 호적의 문헌학적 비교에 대해서는 문현주, 「조선후기

籍吏가 수정한 내용이 표시되어 있다. 중요한 사실은 신순재의 유학 직역을 한량으로 바꾸도록 하였고, 차자의 유학 직역은 삭제하였다는 점이다. 더불어 신순재의 처와 며느리의 지칭을 氏에서 모두 姓으로 고치도록 하였다.

이 내용은 호적에 그대로 반영되었으며, 호구단자에 표시되지 않은 장자의 유학 직역도 호적에서는 삭제되었다. 신순재가 균역에서 벗어난 것은 인정하였지만 그와 아들들이 유학을 칭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신순재와 처의 사조가 모두 학생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주호 부부의 사조를 유학 직역자로 탈바꿈하는 데에는 성공한 것이다. 이는 비 양반층이 유학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었다.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과 부인의 가계 모두 완전하게 유학이 되어야 했던 것이다.



〈그림 3〉 1843년, 1849년 신순재의 호구단자

한 차례 실패를 경험했지만 3년 뒤 다시 만들어진 호적에서 신순재와 그의 아들들은 유학 직역을 획득하였다. 그에 걸맞게 부인과 며느리들 모두 姓 대신 氏를 칭하였다. 사조도 모두 학생이었으므로 이제 그의 가계는 완벽하게 유학이 되었다. 이후의 호구단자와 호적은 모두 이 가계를 유학으로 기재하였다. 새로운 비 양반층 출신 유학 가계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처럼 양반이 아니었던 이들이 유학이 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에 걸친 노력이 필요했다. 노비 가계라면 몇 세대를 지나야 성취될 수 있는 것이기도 했다.

戶口文書의 작성 과정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3, 66-75면 참조.

비 양반 가계가 유학이 되었다고 해서 양반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었지만 양반이 되기 위한 조건 가운데 하나를 획득하였음은 분명하다. 호적 작성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직역 상승은 엄격하게 통제되었지만 18세기 후반 이후 이는 점차 완화되었다. 19세기 신순재는 자신의 당대에 군역자에서 중간층인 한량으로, 다시 유학으로 성장하였다. 적리와 수령은 일시적으로 이를 통제하였지만 결국 허용하였다.

유학 직역 부과의 권한과 책임은 일차적으로 수령에게 있었다. 1893년 순창군의 향약 실시와 호적 작성 과정에서 유학과 한량의 분간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어나자 수령은 “常賤徒隸라 하더라도 (향약의 내용을) 기억하여 외우고 체득해 행할 수 있는 자라면 별도로 장려하고 일으켜야 할 것이니 유학 두 글자를 내가 어찌 아끼겠는가?”라고 告諭하였다.<sup>42)</sup> 유학이 급격하게 증가한 19세기 말의 상황이지만 수령의 교화를 충실하게 따르는 이들에게 유학 직역을 부여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양반들이 독점했던 유학 직역에 국가의 정책에 따라 서열들이 들어가면서 유학의 위상이 하락하고 더 하위 집단에게까지 개방될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 이와 함께 부세 운영 방식이 바뀌면서 수령들은 비 양반층의 유학 직역 사용을 점차 인정하였고, 이를 지방 통치에 활용하였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국가의 입장이다. 조선 왕조는 특권층의 장기 지속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국가를 운영하였다.

국왕의 직계 자손인 종친들에게는 별도의 품계와 작위를 주었는데, 그것은 4대손까지 유효했다.<sup>43)</sup> 왕의 자손들이 영구적으로 종친으로서의 특권을 보장받은 것이 아니었다. 또한 조선왕조에는 국가를 지배하는 세습 귀족이 존재하지 않았다. 대신 과거를 통해 선발된 관료들이 국가를 운영하였다. 하지만 종친의 작위마저 4대로 한정할 이상 관료들에게 세습되는 작위란 있을 수 없었다. 장기간 관료를 배출한 가문도 분명 있었지만 대부분은 간헐적으로 정치권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뿐이었다.

결국 대다수의 양반들은 유학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가진 대표적인 특권은 군역 면제와 과거 응시 기회였다. 그런데 비 양반층의 군역 면제 기회는 갈수록 확대되었고, 실제 합격은 어려웠지만 천인이 아닌 이상 과거에 응시할 수도 있었다.

42) 『淳昌郡守 告諭文(1893년 8월 27일)』(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순창군의 향약 실시에 대해서는 黃載泳, 「1893년 순창군의 鄉約 실시와 隣保組織의 강화」,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20 참조.

43) 『經國大典』 吏典 京官職 正一品衙門 宗親府.

양반이 법적으로 규정된 신분이 아니며 그들에게 세습되는 특권이 크지 않았다는 점, 국가의 정책에 따라 비 양반층의 직역 상승이 가능했다는 점 때문에 양반과 비 양반, 특히 중서나 평민 상층과의 간격은 점차 좁혀졌다.

양반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신분적 특권을 유지하면서 비 양반층의 성장을 견제하는 길 가운데 하나는 가문의 전통을 내세우는 것이었다. 1586년(선조 19) 安聯의 처 윤씨가 宋仁弼 집안사람들을 자신의 시댁 노비의 후손이라며 신분 확인 소송을 벌인 일이 있었다.<sup>44)</sup> 송인필의 동생 송익필은 김장생의 스승이자 이이, 성혼과도 친분이 있었다. 송인필 측에서는 자신들의 가계가 과거에 응시하여 여러 직책을 맡았다는 사실에 대해 삼대에 걸쳐 ‘良役’을 행하였다고 표현했으며, 대대로 ‘士門’과 혼인하고 ‘儒業’을 행한 가문이란 점을 강조했다.<sup>45)</sup>

서얼의 후손으로 정치적, 학문적 영향력을 지녔던 이 집안은 16세기에 ‘양역’을 행하였지만 ‘사문’과 통혼하고 ‘유업’을 실천한, 즉 양반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는 양반이 하나의 신분으로 확립되고 있었던 16세기에 당대인들이 생각하는 양반이기 위한 조건의 일단을 보여준다. 과거 응시를 통한 관직 진출은 물론 나아가 전통 사족 가문과의 통혼, 일상에서 유학의 실천이 바로 그것이다.

이와 함께 시간이 흐를수록 양반으로 행세하기 위해서는 가문의 전통과 문중 활동이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한 연구에서는 18~19세기 양반의 조건으로 호적에 유학으로 등재되고 족보를 보유할 것, 유교적 의례를 준행하고 관직 진출과 같은 다양한 특권을 가질 것, 문중과 동성촌락을 형성할 것 등으로 규정하였다.<sup>46)</sup> 이 가운데 많은 내용들은 宗法의 수용 이후 점차 확립된 부계 친족 집단의 형성 및 그 활동과 연관되어 있었다.

문제는 비 양반층 역시 양반들의 문화를 모방하고 그들이 갖춘 신분적 특권들을 조금씩 획득해 나갔다는 데에 있었다. 앞서 보았듯이 19세기 중반 호적에 등재된 유학호의 절반 이상은 비 양반층 출신이었고, 이들 가운데 일부는 족보를 보유하기도 했다. 이들은 유학 직역의 획득은 물론 제사의 거행과 입양을 통한 가계의 영속성

44) 이 사건의 전개에 대해서는 손경찬, 「조선시대 신분확인 소송-『安家奴案』, 『법학연구』 26-4, 경상대 법학연구소, 2018 참조.

45) 「安家奴案」, 『稗林』 5, 탐구당, 1969.

46) 金盛祐, 「18~19세기 ‘지배양반’ 되기의 다양한 조건들」, 『대동문화연구』 49,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5.

확보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일부 성씨들은 한 촌락에 집거하면서 동성촌락을 형성하기도 하였다.<sup>47)</sup> 나아가 소수이지만 소과나 대과에 합격하고 중앙의 관직자가 된 이들도 생겨났다.

이들의 행위는 국가의 법적 보장과 부세 운영의 변화를 활용하고 양반의 생활 문화를 모방하여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었다.<sup>48)</sup> 하지만 그들은 정치적이거나 학문적인 권위를 가진 顯祖를 보유하지 못한 한계를 가졌다. 양반 문중 활동의 주요한 구심은 현조의 현창과 제의에 있었다. 학문 탐구와 유교 의례의 시행이라는 일상의 행위는 경제력을 갖춘 비 양반층의 접근이 부분적으로나마 가능한 영역이었다. 과거를 통한 성취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성취가 아닌 혈통에 따른 귀속은 넘기 어려운 장벽이었다.

조선 후기 지방 양반들의 관직 진출은 매우 어려웠지만 설령 관직을 얻더라도 18세기 중엽 이후로는 중앙에서 시골뜨기, 곧 鄉閭으로 무시당하고는 하였다.<sup>49)</sup>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커지고, 자신의 거주 공간에서 새로운 세력들이 성장하는 상황에서 권력과 떨어진 지방 양반들은 가문의 전통을 드러내는 문중 활동에 더욱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이들의 시각에서 양반은 획득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신분 역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양반을 지향했던 사람들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유학 직역을 획득하고 자신과 부인의 가계를 유학 혹은 학생으로 완전하게 탈바꿈하였다. 역리 가계에서 중앙 관직자가 된 강영수와 같이 자신의 가계를 유학을 넘어 이름 있는 양반의 후손으로 운색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모방 혹은 양반과의 동일시화는 양반을 지향하는 욕망의 확산과 함께 여전히 신분으로서의 양반이 굳건하게 존재하고 있었던 이중적인 현실을 보여준다.

47) 비 양반층의 입양과 동성촌락 형성에 대해서는 권내현, 「조선후기 입양의 확산 추이와 수용 양상」, 『역사와 현실』 73, 한국역사연구회, 2009 및 앞의 2010 논문 참조.

48) 김상준은 비 양반층의 성장과 양반화를 ‘유교적 평등화’, ‘조선적 평등화’라 명명하였다. 김상준, 「은 나라가 양반되기-조선 후기 유교적 평등화 메커니즘」, 『사회와 역사』 63, 한국사회사학회, 2003.

49) 이경구, 「18세기 중반~19세기 전반 서울-지방 격차와 지식인의 인식」, 『역사비평』 117, 역사비평사, 2016.

호적은 이러한 복잡한 현실과 관념을 상당부분 반영하고 있다. 비 양반층 출신 유학의 증가는 물론 입양과 같은 부계 가족 질서의 수용, 동성촌락의 형성은 호적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동시에 출신과 직역에 따른 차별, 양반층의 배타적 통혼 관계와 타 계층에 대한 배제와 같이 비 양반층이 가진 성장의 한계 역시 호적에서 잘 드러난다. 이와 같은 호적의 내용을 양반층의 증가에 따른 신분 변동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조선이라는 국가는 비 양반층의 신분 상승 가능성을 완전하게 닫아버리지 않았다. 양반들은 비 양반층의 성장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들은 양반들의 특권을 조금씩 획득하고 문화를 모방하면서 양반에 접근해 나갔다. 18세기 후반 이후 양반층 내부의 격차도 커지면서 양반의 하한선과 비 양반층의 상한선이 근접하였고, 일부는 그 선을 뛰어 넘어 올라가기도 하였다. 이 시기는 양반들이 비 양반층을 밀어내는 힘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지만 양반층에 접근하는 비 양반층의 성장이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때이기도 했다.

## V. 맺음말

19세기 후반 단성의 역리 가계 후손이었던 강영수는 과거에 합격하여 청요직인 사헌부 장령에까지 올랐다. 양인의 과거 응시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였으며 호적에 기재된 유학이란 그의 직역이 과거 급제와 관직 진출에 문제가 되지도 않았다. 17세기 이래 오랫동안 역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그의 가계는 19세기 전반부터 유학을 칭하기 시작했다. 19세기 많은 비 양반층 가계가 유학으로 성장하던 흐름에 그의 가계도 편승하였던 것이다.

1846년을 기준으로 단성 법률야면 유학호의 45.5%만이 전통 양반 가계 출신이었다. 나머지는 모두 비 양반층에서 성장한 이들이었다. 유학의 증가는 비 양반층의 신분 상승 욕구가 부세 운영의 변화 등과 결합하여 나타난 현상이었다. 그들의 목적은 균역 면제라는 경제적 이익에서부터 양반층의 모방을 통한 사회적 지위 향상, 나아가 강영수와 같은 관직 진출에도 있었다.

전통 양반들은 비 양반층의 유학 획득을 못마땅하게 여겼으나 그 추세를 막지는

못하였다. 수령들은 주관적 판단에 따라 유학 직역을 부여하기도 했다. 조선 왕조는 종친이나 관료 집단에게 장기간 영속되는 특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국가를 지배하는 세습 관료들이 존재한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일부 군역이나 역민과 같이 고역인 직역의 통제나 지속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양반들이 자신들의 사회적 특권을 유지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는 차별과 배제였다. 사족과 이족의 분화, 서얼 차별, 유향 분기, 구향과 신향의 대립, 원유와 별유의 구분 등이 그러한 사례에 해당하였다. 물론 중서층도 부유한 평민층의 성장을 경계했고, 평민들은 다시 수군이나 역민 출신들을 차별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하에서 노비의 후손들은 평민들보다 성장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했다.

비 양반층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오랜 사회적 통념을 극복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은 호적에 유학으로 기재되면서 자신과 부인의 가계 역시 유학이나 학생으로 윤색하였다. 강영수는 여기에 더해 자신을 고위 무관의 후손으로 탈바꿈시켰다. 기존의 지방 양반들이 가문의 전통, 특히 현조의 현창에 주력한 것은 비 양반층의 성장에 대한 보수적 대응이자 정치권력에 접근하기 어려운 현실에 대한 자위적 조치이기도 했다.

단조롭게 보이는 호적의 기록은 이러한 사회 현상을 투영하고 있다. 유학에서 멈춘 많은 양반들의 지체, 그들에 접근해 나가는 비 양반층의 노력,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차별 등을 모두 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어떤 집단의 어떠한 모습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신분 변동일 수도 혹은 신분의 안정적 지속일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분명한 것은 양반이 법적으로 규정된 신분이 아니듯 양반이 지닌 특권을 공유하거나 그들의 생활양식을 모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이다. 결국 조선 후기 신분제의 주요 흐름 가운데 하나는 차별과 배제를 통한 양반층의 보수적 대응 하에서도 양반이 가진 특권의 하향 확산과 비 양반층의 양반 모방 확산에 있었다. 신분제 변동이나 해체를 근대 이행의 근거로 보는 선형적 인식에서 벗어난다면 호적은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준다.

## 참고문헌

『國朝榜目』  
『丹城戶籍大帳』  
『大典會通』  
『洞內穀物息利有司姓名冊』  
『文譜』  
『備邊司文武郎官契會圖』  
『沙斤道形止案』  
『崇禎再丁未合五慶增廣別試司馬榜目』  
『承政院日記』  
『掾曹龜鑑續編』  
『聲齋集』  
『朝鮮王朝實錄』  
『稗林』  
『許廳案』  
「淳昌郡守告諭文」  
「辛順再戶口單子」

김성우, 『조선중기 국가와 사족』, 역사비평사, 2001  
宋俊浩, 『朝鮮社會史研究, 朝鮮社會의 構造와 性格 및 그 變遷에 關한 研究』, 일조각, 1987  
劉承源, 『朝鮮初期 身分制 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1986  
李成茂, 『朝鮮初期兩班研究』, 일조각, 1980  
李俊九, 『朝鮮後期 身分職役變動研究』, 일조각, 1993  
조병로, 『韓國近世驛制史研究』, 국학자료원, 2005  
韓永愚, 『朝鮮前期 社會經濟研究』, 을유문화사, 1983

權奇重, 「단성호적에서 보는 향리가계의 호구등재」, 『대동문화연구』 52,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5  
\_\_\_\_\_, 「조선후기 호적 연구의 현재와 향후 과제」, 『대동문화연구』 100,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7  
권내현, 「조선후기 입양의 확산 추이와 수용 양상」, 『역사와 현실』 73, 한국역사연구회, 2009  
\_\_\_\_\_, 「조선 후기 평민 동성촌락의 성장」, 『민족문화연구』 52,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0  
\_\_\_\_\_, 「내재적 발전론과 조선 후기사 인식」, 『역사비평』 111, 역사비평사, 2015

- \_\_\_\_\_, 「19세기 조선 사회의 계층 이동 양상-유학호와 비유학호의 비교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103,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8
- 김건태, 「19세기 공노비 후손들의 삶-제주도 대정현 사례」, 『민족문화연구』 69,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5
- 김경란, 「조선후기 호적대장의 驛女기재와 驛役의 수취-경상도 단성현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연구』 68, 한국외대 역사문화연구소, 2018
- 김상준, 「온 나라가 양반되기-조선 후기 유교적 평등화 메커니즘」, 『사회와 역사』 63, 한국사회사학회, 2003
- 金盛祐, 「18~19세기 ‘지배양반’ 되기의 다양한 조건들」, 『대동문화연구』 49,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5
- 김준형, 「19세기 진주의 신흥계층 ‘幼學’호의 성격」, 『조선시대사학보』 47, 조선시대사학회, 2008
- \_\_\_\_\_, 「조선후기 晉州의 舊鄕·新鄕, 元儒·別儒의 재분석」, 『조선시대사학보』 78, 조선시대사학회, 2016
- \_\_\_\_\_, 「18세기 향촌사회 신분구조의 혼효」, 『역사와 경계』 103, 부산경남사학회, 2017
- 노영구, 「朝鮮後期 戶籍大帳 研究現況과 電算化의 一例」, 『대동문화연구』 39,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1
- 문현주, 「조선후기 戶口文書의 작성 과정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3
- 미야지마 히로시, 「조선시대의 신분, 신분제 개념에 대하여」, 『대동문화연구』 42,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3
- 백광렬, 「한국 근대전환기 ‘신분’·‘신분제’ 용어의 성립과 변천」, 『개념과 소통』 22, 한림과 학원, 2018
- 손경찬, 「조선시대 신분확인 소송-『安家奴案』」, 『법학연구』 26-4, 경상대 법학연구소, 2018
- 손병규, 「戶籍大帳 職役欄의 軍役 기재와 ‘都已上’의 통계」, 『대동문화연구』 39,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1
- 송양섭, 「19세기 幼學層의 증가양상-『단성호적대장』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55, 한국역사연구회, 2005
- 심재우, 「조선후기 단성현 법률야면 유학호의 분포와 성격」, 『역사와 현실』 41, 한국역사연구회, 2001
- \_\_\_\_\_, 「조선후기 사회변동과 호적대장 연구의 과제」, 『역사와 현실』 62, 한국역사연구회, 2006
- 우인수, 「18세기 중엽 沙斤道 驛人의 戶口 구성과 실태-沙斤道 形止案의 분석을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51, 한국고문서학회, 2017
- 이경구, 「18세기 중반~19세기 전반 서울~지방 격차와 지식인의 인식」, 『역사비평』 117, 역사비평사, 2016

- 이노우에 가즈에, 「19세기 戶籍大帳에서 보는 역촌 사람들의 存在樣態- 晉州 召村里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42,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3
- 이유진, 「18세기 대구부 서상면의 신분변동에 대한 계보적 추적」, 『대동문화연구』 87,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4
- \_\_\_\_\_, 「18세기 중엽 사근도 형지안과 단성현 호적대장의 역인 기재 비교 분석」, 『고문서연구』 51, 한국고문서학회, 2017
- 李俊九, 「18·19세기 身分制 변동 추세와 身分 지속성의 경향」, 『한국문화』 19, 서울대 한국학연구원, 1997
- 李海濬, 「조선후기 晉州地方 儒戶의 實態-1832년 晉州 鄕校 修理 記錄의 분석」, 『진단학보』 60, 진단학회, 1985
- 임학성, 「18세기 중엽 沙斤道 소속 驛人의 직역과 신분-1747년 “沙斤道形止案” 자료의 분석 사례」, 『고문서연구』 51, 한국고문서학회, 2017
- 정진영, 「향촌사회에서 본 조선후기 신분과 신분변화」, 『역사와현실』 48, 한국역사연구회, 2003
- 조병로, 「조선후기 沙斤道形止案의 내용과 성격」, 『고문서연구』 51, 한국고문서학회, 2017
- 黃載泳, 「1893년 순창군의 鄕約 실시와 隣保組織의 강화」,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20

# Growth and Discrimination, Household Register and Status in the late Chosŏn Dynasty

Kwon, Nae-hyun

Many *yuhaks* in the 19th-century household registers grew up in non-upper class households. While many wanted to avoid the required military service, more and more people simply imitated the culture and way of life of the upper classes. Some of them passed the state examination and served as state officials. However, it was very difficult for the non-upper class to be incorporated into the ruling class, and the traditional upper classes suppressed their growth in by way of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It was also a conservative response of the upper class to the changed political and social realities. The state did not recognize the perpetual privileges of royalty or bureaucratic groups and controlled the hard occupation. During this process, some of the lower classes gained opportunities for growth, and some were restricted by discrimination. The household registers of the late Chosŏn Dynasty show not only an increasing number of *yuhaks*, but also various aspects of status structure and change. This also meant the downward movement of privileges previously held by the upper class and an increase of the non-upper class' imitation of the upper class.

Key Words : Social growth, Status, Household register, Yuhak(幼學),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Imitation